
경주정씨 가문의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후기 罷繼의 양상과 가문의 계승

고민정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

머리말

1. 가문의 계승 과정
2. 1차 파계 갈등
3. 2차 파계 갈등
4. 파계 이후의 갈등
5. 파계의 이유

맺음말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8021566).
- 투고일: 2018. 5. 15. ● 심사일: 2018. 5. 15. ● 게재확정일: 2018. 5. 29.
- <https://doi.org/10.31218/TRKH.2018.06.130.137>

www.kci.go.kr

요약

본고는 조선후기 가문의 가계계승을 고찰하기 위하여 경주정씨 가문의 고문서를 분석하여 계승 과정과 파계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제까지 입후가 곧 가계계승의 성공이라고 보았던 관점을 탈피하여 입후 이후에도 나타날 수 있는 계승의 문제를 조명하려고 하였다.

경주정씨 가문은 양경공 정희계의 적장후손으로 경기도 안성을 기반으로 세거하였다. 이 가문의 가계계승 양상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적장자에 의한 계승이 이루어지나 적장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체로 입후로 계승을 이어나가는 형태를 보여주었다.

이 가문에 파계로 인한 갈등은 정행묵의 후사로 인해 발생하였고 3단계에 걸쳐 전개되었다. 첫 번째는 문중에서는 계후자 정익환의 성품과 자질의 문제로 파계를 결정하였으나, 정익환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생긴 갈등이다. 두 번째는 정익환의 아들 정판석이 다시 파계를 인정하지 않고 정희계의 봉사손임을 주장하여 생긴 갈등이다. 세 번째는 공식적으로 정익환이 파계된 후에도 그의 아들 정판석이 이에 불복하여 사판을 탈취하는 등 물리적 행사를 하였기 때문에 생긴 갈등이다.

이처럼 계후자와 문중 간에 가계계승권을 둘러싼 갈등이 시작되면 상당기간 지속되며 자체적으로 조정하지 못하였으며, 결국에는 국가가 개입하여 강제적으로 해소시키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문중에서 이와 같은 갈등이 수반되는 데에도 파계를 감행한 것은 더 적합한 계승자를 선택하여 가문을 운영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즉 문중 내에서 계후자를 결정하는 주체의 변화, 기존 계후자의 자질과 성품의 문제, 새로운 후보자의 등장 등이 빚어낸 하나의 결과물이었다.

주제어 : 가계계승, 파계, 파양, 입후, 고문서, 친족

머리말

17세기 이후 조선에 나타난 독특한 사회문화적 현상 중의 하나는 부계에 의한 가문의 계승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성리학적 중법의 영향으로 가문의 계승자를 세우는 현상이 확산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하는 데까지 이르렀다.¹⁾ 즉 적장자에 의한 계승이 대를 이어 연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적장자가 가문의 상속권과 봉사권을 독점하게 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입후는 적장자에게 다음 대를 물려줄 아들이 없는 경우 가계계승을 위한 하나의 차선책으로 주목을 받았다. 입후는 시양·수양과 달리 가문의 계승이라는 뚜렷한 목적 아래 양자를 들이는 것을 말하는데, 후사가 없는 자가 부계의 친족 중에 조카항렬에 해당하는 자를 아들로 삼고 제반의 권리와 의무를 물려주는 것이다. 또한 입후의 요건, 대상, 방법 등이 법전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준수하여야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현재까지 조선후기 가계계승에 관한 연구는 입후에 크게 주목하여 이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조선의 가족제 성격을 밝히기 위해 시작된 초기 연구에서는 입후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주요하게 설명하였고 17세기 전후 상속제의 변화를 밝히는 과정에서 함께 논의되었다.²⁾ 그리고 이 같은 논의를 계승하면서, 입후가 17세기에 나타난 급격한 사회현상이 아니라 점진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나타난 과정이며, 동시에 결과라는 입장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³⁾ 최근에는 국초에 성립된 입후제의 기본

1) 권내현, 2014, 『노비에서 양반으로, 그 머나먼 여정』, 역사비평사.

2) 金斗憲, 1983, 『韓國家族制度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최계석, 1996, 『韓國家族制度史研究』, 一志社.

3) 마크 피터슨 저, 김혜정 역, 2000, 『儒敎社會의 創出』, 일조각; 박경, 2011, 『조선

적인 틀은 17세기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였으나 국가에서 가문의 계승을 장려하는 차원과 특정 계층을 우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가문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입후제를 운영하였다는 연구까지 이루어졌다.⁴⁾

이와 같은 성과 아래 과거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과거는 입후가 이루어진 후 여러 이유로 인해 입후 이전의 상태로 다시 되돌리는 행위를 뜻한다. 초기 연구에서 과거는 독립된 연구주제로 다루어지기 보다는 입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설명되었다. 특히 명종대의 수교로 정리된 과거귀종은 당시의 입후 성격을 설명하는 하나의 소재로 사용되었다.⁵⁾ 그런데 최근 18세기 초반 과거의 양상을 유형화하여 설명한 연구가 있었고⁶⁾ 연좌제와 연결시켜 나타난 과거의 현상과 성격을 고찰한 연구가 진행되었다.⁷⁾

과거에 관한 고찰이 의미 있는 이유는 이전까지의 연구경향이 입후의 성립까지만 주요하게 다루었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입후가 성립된 후 만약 이로 인해 가문 내의 갈등이 생기게 되면 계후자가 본연의 목적과 의도대로 가문을 계승하지 못하고 과거되는 극단의 형태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만약 과거가 결정되면 해당 가문은 계후자가 없었던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다시 絶嗣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문에서 과거를 결정하게 된 원인과 과정은 어떠했는지, 이후의 계승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전기의 입양과 가족제도』, 해안.

4) 고민정, 2014, 「조선후기 가계계승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 김두현, 앞의 책, 267~268쪽; 마크 피터슨, 앞의 책, 176~177쪽.

6) 박경, 2011, 「罷繼 행정을 통해 본 18세기 입후법 운용」, 『장서각』 25.

7) 고민정, 2016, 「조선후기 연좌제 운영을 통해 본 罷繼의 양상과 가계계승」, 『사학연구』 124.

경주정씨 가문의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 후기 罷繼의 양상과 가문의 계승

본 연구는 입후 이후에 발생한 가문 내의 갈등 상황과 전개 과정을 면밀히 추적하고 파계의 양상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경주정씨 가문의 고문서를 주요 사료로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경주정씨는 경기도 안성에 세거하고 있는 개국공신 정희계의 적장후손 가문이다. 이 가문은 교지, 교첩, 계목, 단자 등 약 40점의 고문서를 소장하고 있으며⁸⁾ 이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고문서가 입후 갈등 및 파계와 관련되어 있어 사례연구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본문에서는 먼저 가문을 구성하는 주요 인물을 포함하여 계승 과정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는 형태로 그 추이를 고찰하고자 한다. 다음은 19세기에 계승 문제로 일어난 가문의 갈등 양상과 파계 과정을 시기적 간격에 따라 1차와 2차로 나누어 각각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파계 이후에 나타난 갈등 양상과 가문의 계승이 마무리되는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1. 가문의 계승 과정

본고에서 다루는 경주정씨는 樂浪侯 鄭智伯虎를 시조로 하며 良敬公 鄭熙啓(1348~1396)를 파조로 삼고 있다. 양경공 정희계는 시조의 49세손으로 부친은 문하평리 鄭暉, 조부는 유비창승 鄭子楚이다. 첫째 부인은 정경부인 서원엄씨로 廉悌臣(1304~1382)의 딸이다.⁹⁾ 둘째 부인은 辛貴의 딸이며 康允忠(?~1359)의 손녀, 신덕왕후 강씨의 조카이므로 태조 이성계와도 인척이 된다.

정희계는 고려 때부터 대호군, 판밀직사사, 지밀직, 판자혜부사 등의 판직을 역임하였고¹⁰⁾ 왜구의 토벌을 위한 김화전투에 참전하였다.¹¹⁾

8) 안성문화원, 2011, 『안성시지 문헌자료집』 8, 안성시.

9) 『牧隱文藁』 15권 「廉悌臣神道碑」

1392년 문하평리로서 배극렴, 조준, 정도전 등과 함께 이성계를 추대하여 조선을 개국하였다.¹²⁾ 그리고 이 공로를 인정받아 佐命開國一等功臣에 책봉되었으며 전결 170결과 노비 20구를 하사받았다.¹³⁾ 1395년 관한성부사가 되었으며 재임 도중 등창으로 사망하였다.¹⁴⁾

사후에 시호를 정하면서 그의 功過를 논하는 데에 논란이 있었다. 봉상시에서는 安煬·安荒·安惑 중 하나가 적합하다고 여겼으나¹⁵⁾ 태조는 功을 논하지 않고 過만 논하였다고 여겨 봉상시 관원들을 탄핵하였으며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하였다.¹⁶⁾ 그리고 새로 논의하여 양경이라는 시호를 내려주었다.¹⁷⁾

정희계의 사망으로 국가에서는 朝會를 정지하고 禮葬을 명하였는데, 이는 그가 관한성부사로 재임하였기 때문에 예우한 것으로 보인다. 15세기에 제정·반포되었으나 조선초기에 정비된 문물의 제반사항을 담은 『경국대전』의 「喪葬」조에는 ‘종친·대신이 사망하면 啓聞하여 조회를 정지하고 예장’한다는 규정이 수록되어 있다.¹⁸⁾ 또한 개국공신이었기 때문에 조친하지 않는 불천위로 지정되었는데, 이 역시 『경국대전』의 「奉祀」조에서 ‘처음 공신이 된 자는 대수가 다하더라도 신주를 옮기지 않고 별도의 一室을 세운다’는¹⁹⁾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

10) 『高麗史節要』 卷28 「恭愍王三」, 공민왕 18년(1369) 6월; 『高麗史節要』 卷32 「辛禑三」, 우왕 10년(1384) 11월; 『高麗史節要』 卷34 「恭讓王一」, 공양왕 2년 1월; 『高麗史節要』 卷35 「恭讓王二」, 공양왕 4년 6월.

11) 『高麗史節要』 32권 「辛禑三」, 우왕 9년(1383) 9월.

12) 『太祖實錄』 1권, 1년(1392) 7월 17일 병신.

13) 『太祖實錄』 1권, 1년(1392) 7월 28일 정미; 『太祖實錄』 1권, 1년(1392) 8월 20일; 『太祖實錄』 2권, 1년 9월 16일 갑오.

14) 『太祖實錄』 10권, 5년(1396) 7월 12일 정묘.

15) 『太祖實錄』 10권, 5년(1396) 8월 28일 계축.

16) 『太祖實錄』 10권, 5년(1396) 8월 29일 갑인.

17) 『太祖實錄』 10권, 5년(1396) 9월 5일 경신.

18) 『經國大典』 「禮典 喪葬」, 宗親大臣卒, 啓聞輟朝, 致賻弔祭, 禮葬.

19) 『經國大典』 「禮典 奉祀」, 始爲功臣者, 代數盡不遷, 別立一室.

경주정씨 가문의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후기 罷繼의 양상과 가문의 계승

정희계의 아들은 모두 3명으로 鄭吉祥(1367~1420), 鄭孝祥, 鄭契祥이 있다. 첫째 아들 정길상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鄭之仁, 鄭之義(1395~1463), 鄭之禮, 鄭之智이다. 이 중 정길상의 첫째 아들 정지인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²⁰⁾ 정길상에서 정지인으로 봉사가 이어지지 못하고 정지인의 동생 정지의로 연결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 경우는 입후가 일반화되지 않았던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형망제급에 의한 봉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정지의 이후로는 형망제급에 의한 봉사가 이루어진 경우는 없고 모두 적장자에 의한 승계 또는 입후에 의한 승계가 이루어졌다. 입후에 의한 승계가 최초로 이루어진 것은 鄭壽萊 때이다. 정수래는 同高祖八寸 관계에 있는 鄭沔의 첫째 아들 鄭栢齡(1528~?)을 입후하였다. 이 경우에 논란이 되는 부분은 다른 가문의 첫째 아들을 계후자로 삼았다는 것이다.

입후의 대강을 규정한 『경국대전』 「입후」조에 의하면 첫째 아들을 제외한 둘째 아들부터 입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첫째 아들은 그 본래 가문의 봉사를 책임져야 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간주하였기 때문에 애초부터 입후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16세기부터 법전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왕의 특별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입후가 성립되는 경향이 있었다.²¹⁾ 더욱이 공신의 적장손인 경우는 공신을 봉사한다는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고 공신의 봉사는 여타의 다른 봉사보다 특별히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다른 가문의 장자를 입후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가하는 풍토가 생겨났다.²²⁾ 즉 이 경우 역시 「입후」조의 내용과 어긋나지만 왕의 윤허에 의거한 특별한 계후가 이루어졌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20) 『慶州鄭氏良景公派大同世譜』 수권 12쪽. 子之仁, 護軍, 无后.

21) 박경, 앞의 책, 174~176쪽.

22) 고민정, 2013, 「조선후기 장자 계후의 특권적 성격」 『태동고전연구』 31.

정백령이 정수래의 후사가 된 이후 다시 정백령은 鄭承勳을 입후하였다. 정백령과 정승훈의 생부 鄭仁壽은 통상적인 친족 범위를 넘어서는 16촌지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먼 친족간의 입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백령도 계후자였으므로 원래의 친족관계를 토대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해보면 모두 정면의 아들로 친형제지간이기 때문에 매우 가까운 혈연관계에 놓여 있었다. 이 같은 현상은 ‘양자 교환’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양부가 생부 가문에서 입후를 하기 전에 이미 생부의 선조가 양부의 선조에서 입후한 전례가 있을 때’를 의미한다.²³⁾ 다시 말하면 입후의 대상을 고려하는 데에 있어서 혈연의 친소는 17세기 이후에도 중요한 요소의 하나임을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다.

정승훈의 입후가 성립된 이후 적장자에 의한 승계가 이루어졌으나 정승훈의 손자 鄭雲望(1617~1676)은 동생 鄭雲卿의 아들 鄭淵(1640~1706)을 계후자로 삼았고, 정연의 손자 鄭嗣周는 사촌 鄭嗣仁의 아들 鄭有良(1724~1779)을 계후자로 삼아 가문을 승계하였다. 그 후 정유량의 증손자 鄭行默(1791~1856)에 이르러 다시 입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때 시조의 49세 정희계부터 65세 정행묵까지의 총 18명 중 12명은 적장자에 의한 승계, 5명은 계후자에 의한 승계가 이루어졌으며 나머지 1명은 형망제급에 의해 승계되었다. 즉 대체로 적장자로 승계하였으나 적장자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형망제급과 입후로 대체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형망제급은 15세기에 1차례 있었으며 입후는 16~19세기에 5차례 있었으므로 시기적 선택지에 차이가 있었음도 아울러 확인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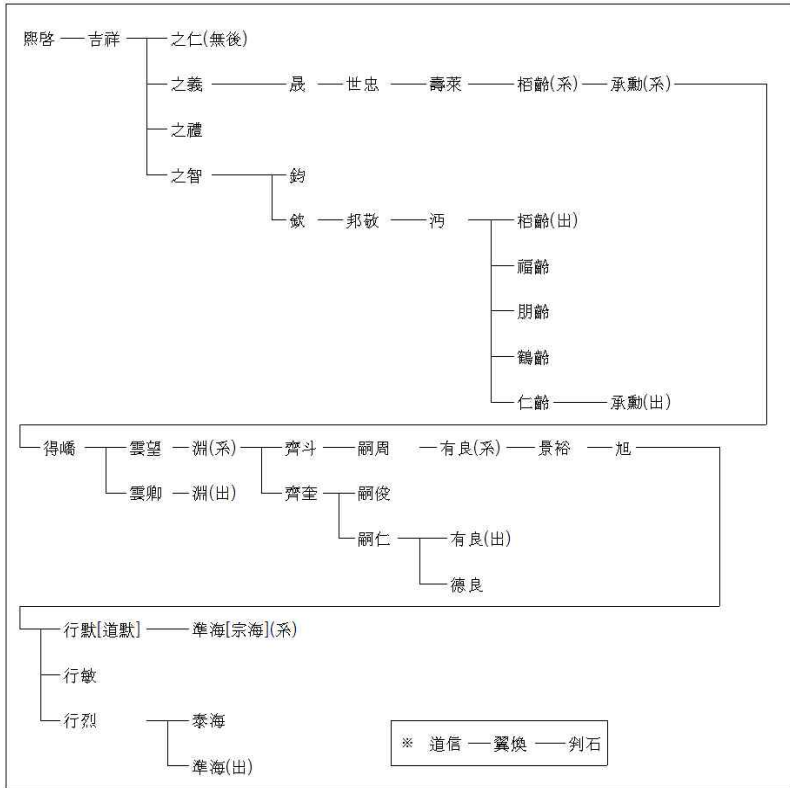
다음 【표 1】은 앞서 설명한 가문의 주요 인물과 계승 상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²⁴⁾

23) 권내현, 2008, 「조선후기 입양의 시점과 범위에 대한 분석」, 『대동문화연구』 62, 63쪽.

24) 【표 1】은 『慶州鄭氏良景公派大同世譜』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경주정씨 가문의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후기 罷繼의 양상과 가문의 계승

【표 1】 경주정씨 양경공파 적장후손 가계도



이들 가운데 과거에 급제한 자는 정운망이 있다. 정운망은 1651년 무과 별시에 급제하였고²⁵⁾ 武郎廳, 藍浦縣監, 寶城郡守, 武兼宣傳官, 慶尙左水虞侯 등을 역임하였다.²⁶⁾ 그러나 공신의 적장손들은 공신의 작위를 대대

25) 『辛卯別試文[武]科榜目』.

26) 『承政院日記』 145책 효종 8년(1657) 6월 5일 병자; 『承政院日記』 147책 효종 8년(1657) 12월 21일 기축; 『승정원일기』 162책 현종 1년(1660) 6월 16일 기해; 『승정원일기』 186책 현종 5년(1664) 12월 21일 무인; 『승정원일기』 219책 현종 11년(1670) 3월 10일 정묘.

로 세습하였기 때문에²⁷⁾ 정희계의 적장후손도 역시 개국공신의 지위를 승습하여 일정한 품계 및 관직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운망의 계후자 정연은 과거와 상관없이 黃海道兵馬虞候, 龍川府使, 明川府使 등을 역임하였다.²⁸⁾ 또한 그가 1680년 宣略將軍 行龍驤衛副司果에 임명된 교지가 남아있는데, ‘개국공신 정희계의 적장손으로 陞敍하였다’는 임명 사유가 부기되어 있어 이 같은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²⁹⁾

현재 정희계 적장후손 가문은 경기도 안성시 일대에 세거하고 있다. 이 가문에서는 안성으로의 세거시점을 대략 18세기 중·후반인 61세손 정사주 때로 파악하고 있다.³⁰⁾ 그러나 정사주의 묘소가 충남 아산에 조성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³¹⁾ 주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다음은 세거지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묘소의 위치를 추적하면, 다음 【표 2】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³²⁾

【표 2】 경주정씨 세대별 묘소 위치

대수	성명	묘소 위치	비고
49~50세	정희계~정길상	양천	현 서울시 양천구
51~55세	정지의~정백령	경기 양주	
56~58세	정승훈~정운망	충남 홍주	현 충남 홍성
59~63세	정 연~정경유	충남 아산	
64~65세	정 옥~정행목	경기 안성	

27) 신명호, 2003, 『조선의 공신들』, 가람기획, 328~329쪽.

28) 『승정원일기』 309책 숙종 11년(1685) 6월 24일 계축; 『승정원일기』 331책 숙종 14년(1688) 9월 16일 을유; 『승정원일기』 366책 숙종 22년(1696) 6월 22일 병오.

29) 1680年 鄭淵 告身. 教旨. 鄭淵爲宣略將軍, 行龍驤衛副司果者. 康熙十九年閏八月十八日. 開國功臣鄭熙啓嫡長孫陞敍事, 承傳.

30) 『慶州鄭氏良景公派大同世譜』 1권 32쪽.

31) 『慶州鄭氏良景公派大同世譜』 1권 32쪽.

32) 【표 2】는 『慶州鄭氏良景公派大同世譜』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경주정씨 가문의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후기 罷繼의 양상과 가문의 계승

조선이 건국된 후 1394년 태조가 정희계의 私第를 거쳐 수창궁으로 거둥하였다는 사실을 토대로,³³⁾ 정희계가 고려 말부터 1394년까지 개성에 거주하였다는 것이 확인된다. 조선이 한성으로 도읍을 옮긴 이후 정희계는 중앙 관직을 역임하였고 1433년 정희계의 부인 영산신씨가 延昌君公主家와 이웃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볼 때³⁴⁾ 한성으로 거주지를 옮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정희계 부친 정희의 묘소가 개성에 조성된 것에 반해³⁵⁾ 정희계의 묘소는 한성과 가까운 양천에 조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³⁶⁾

51세손 정지의부터 55세손 정백령까지의 묘소는 경기 양주에 조성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양주는 한성의 근기지역으로, 한성에서 관직에 종사하던 사족들이 묘산을 조성하거나 농장 또는 별서로 점유하던 지역이었다.³⁷⁾ 이렇게 볼 때 경주정씨가 양주에 거주했다기보다는, 한성에 있으면서 인근 지역인 양주에 묘소를 조성했다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같다.

56세손 정승훈부터 63세손 정경유까지는 충남에 묘소가 조성되었다. 정승훈·정득교·정운망의 묘소는 홍주 대인리에 있고 정연·정제두·정사주·정유량·정경유의 묘소는 아산 석정리에 있다. 이 중에서 정운망은 무과에 급제할 당시인 1651년 홍주에 거주하였고³⁸⁾ 정운망의 계후자 정연도 1691년 용천부사에서 물러나 홍주의 본가에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³⁹⁾ 그러므로 이 가문은 적어도 17세기 중반부터는 홍주에서 세거하였음을 알 수 있다.

64세손 정욱(1773~1816)에 이르러서 비로소 안성에 묘소를 조성하였

33) 『太祖實錄』 5권, 3년(1394) 2월 11일 신사.

34) 『世宗實錄』 60권, 15년(1433) 6월 8일 기축.

35) 『慶州鄭氏良景公派大同世譜』 수권 12쪽.

36) 『慶州鄭氏良景公派大同世譜』 수권 12쪽.

37) 정만조 외, 2004, 『조선시대 경기북주지역 집성촌과 사족』, 국민대출판부, 114~127쪽.

38) 『辛卯別試文[武]科榜目』.

39) 『承政院日記』 344책 숙종 17년(1691) 3월 6일 임진.

고 정육의 아들 정행묵도 이곳에 묘소가 있다. 더욱이 1858년 이후 이 가문에서 안성군수에게 청원서를 올릴 때 송죽면에 거주하는 民 또는 化民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는 점에서⁴⁰⁾ 이미 안성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⁴¹⁾ 따라서 이들의 생몰년을 토대로 해당 시기를 추정하면 19세기 중반 이전에 안성으로 지역적 연고를 완전히 옮겼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정희계의 불천위 사우의 위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조선 후기 불천위 사우는 종가와 함께 위치하기 때문에,⁴²⁾ 사우의 위치 변화는 곧 종가의 거주지 변화와 궤를 같이한다. 정희계 사우의 위치는 1859년 化民 鄭敬奎 등이 수령에게 올린 단자를 통해서 그 일단을 찾을 수 있다.

松竹面 松山里 化民 鄭敬奎가 올립니다. ……

本孫이 낙향한 후 사우를 봉안하였고 또 卿宰의 선영이 있었기 때문에 一洞에서 수호하여 烟役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아! 30년 전 사우를 麻田에서 移安하였고 자손들도 다른 지역에서 옮겨 왔으나 民戶에 편제되어 雜役에 혼입되었습니다. 재작년(1857) 제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고 사우도 다시 받들었으니 그 잡역에 대해서는 전과 같이 침범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 松山一里는 지금이후로 잡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뜻으로 完文을 성급하여 영원히 준행하게 할 것을 천만 바랍니다.⁴³⁾

40) 1858년 鄭五誠 單子. 松竹面■里居幼學鄭五誠單子. 恐鑑. 伏以民之先祖良景開國元勳.; 1859년 鄭敬奎 等 單子. 松竹面松山里化民鄭敬奎.

41) 진경목, 1994, 『朝鮮後期 所志類에 나타나는 '化民'에 대하여』, 『고문서연구』 6.

42) 진중환, 2005, 『종족집단의 경관과 장소』, 논형, 139~191쪽.

43) 1859년 鄭敬奎 等 單子. 松竹面松山里化民鄭敬奎. …… 本孫落鄉後, 祠宇奉安, 而又有卿宰先塋, 故一洞守護, 勿侵烟役矣. 粵在三十年前, 祠宇移安于麻田, 子孫亦移于他境, 而編載民戶, 混入雜役矣. 再昨年民復還鄉, 祠宇更奉則其於雜役, 不可無依前勿侵. …… 松山一里段, 從今以後, 勿侵雜役之意, 完文成給, 以爲永久遵行之地, 千萬伏祝.

경주정씨 가문의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후기 繼繼의 양상과 가문의 계승

위의 내용은 경주정씨 가문에서 자신들은 개국공신 정희계의 후손으로 잡역이 면제되었으나 30년 전부터 잡역이 부과되었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을 담고 있다. 다만 잡역이 부과된 계기가 사우를 마전에서 송죽리로 옮긴 후부터라는 내용을 통해서, 1829년부터는 사우가 안성에 위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손들이 다른 지역에서 이곳으로 옮겨 왔다는 내용을 통하여, 이 시기에 본격적인 이거가 있었음을 아울러 알 수 있다.

이렇듯 정희계는 조선이 건국된 후 개성에서 한성으로 이거하였고 그 후손들은 일정기간 한성에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7세기 중반에는 충청남도 홍주에 세거하였으며 18세기 중·후반에서 19세기 중반 사이에 경기도 안성으로 다시 거주지를 옮겨 현재까지 세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1차 파계 갈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후기 경주정씨 가문은 가계의 단절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입후를 통해 이를 해결하였다. 그런데 19세기 65세순 정행묵 때 차기 계승자를 입후한 후 가문 내의 갈등이 촉발되어 파계에 이르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입후한 후에 파계를 하게 되면 국가에서 해당 가문에 발급한 입후사실 증명서인 계후입안과 제반 문서를 모두 交周하기 때문에, 당초의 입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기 어렵다. 그러나 정행묵의 사례는 예조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편찬한 『계후등록』에 핵심 내용이 짧게 요약되었기 때문에 그 대강을 찾아볼 수 있다.

一. 曹啓目に, 이번에 올린 幼學 鄭道默[鄭行默]이⁴⁴⁾ 無後하여 그의 동성 8촌형 臨陂 幼學 鄭道信의 둘째 아들 翼煥[昌煥]을⁴⁵⁾ 입후하는 일을 門長 幼學 鄭文永이 동의·정당한 것에 의거하여 앞의 정익환을 정도묵의 계후로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도광 18년(1838) 12월 10일. 右部承旨 臣 洪祐順 담당. 啓대로 할 것을 윤허한다.⁴⁶⁾

위 내용에 따르면, 1838년 정행묵은 42세에 대를 이을 후사가 없어서 임피(현 전북 군산)에 거주하는 그의 동성 8촌형 정도신의 둘째 아들 정익환을 입후하였고 당시 문장 유학 정도신이 증인이 되었다. 이 입후는 『경국대전』 「입후」조의 규정에 비추어보면 계후자가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입후의 요건에 문제가 없었고, 생부와 양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입후 절차에도 적법했다. 또한 예조에 청원하여 왕의 윤허를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였고 계후입안이 발급되었다.

그런데 이 입후를 둘러싸고 계후자와 문중 간의 갈등이 발생하여 외부로 알려진 것은 약 20년이 지난 후이다. 다음은 1858년 경주정씨 가문에서 정익환의 파계를 주장하며 예조에 올린 單子の 일부분으로, 이를 통해 그간의 사정을 파악할 수 있다.

저의 선조는 ■…■ 시호를 받은 양경공, 이름은 熙啓이며 개국제일등 공신으로 공신녹권을 받은 것이 충훈부에 있고 不祧의 은전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祀孫 鄭行默이 후사가 없어서 遠宗 전라도 臨陂에 거주하는 정

44) 鄭行默의 초명은 行五였다가 道默으로 개명하였고 이후에 다시 行默으로 개명하였다(『慶州鄭氏良景公派大同世譜』 1권 32쪽). 본고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정행묵으로 통칭하겠다.

45) 鄭翼煥의 이름은 앞으로 살펴볼 소지·단자 등의 기록에서 昌煥과 혼칭되어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정익환으로 통칭하겠다.

46) 『繼後瞻錄』 18. 一曹啓目, 節呈幼學鄭道默無後, 以其同姓八寸兄臨陂幼學鄭道信, 第二子翼煥立後事, 門長幼學鄭文永同議呈狀據, 向前鄭翼煥乙, 鄭道默繼後何如? 道光十八年十二月初十日. 右部承旨臣洪祐順次知. 啓依允.

경주정씨 가문의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후기 繼繼의 양상과 가문의 계승

창환[정익환]을 지난 병신년(1839)에 예조에 呈狀하여 계후하였습니다.⁴⁷⁾

정창환이 항상 그 집에 ■…■ 있으면서 繼父를 봉양할 뜻이 없고 그 불효의 죄상이 한두 가지에 그치지 않기에 정행목이 파양[과계]하고 돌려 보냈습니다. 정창환이 廟門을 부수고 칼을 빼어들고 난동을 일으켰으며 예조문권[계후입안]을 몰래 훔쳐서 본가로 돌아가서 그대로 자취가 끊어졌습니다.⁴⁸⁾

지난 병진년(1856) 8월 사손 정행목이 갑자기 사망하고 몇 개월 후에 정창환이 자칭 ‘계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들어와 상례 ■…■ 세상에 어찌 살아서는 섬김이 없었는데 죽어서 그 상례를 치르는 의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헤아리면 倫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나 祀孫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⁴⁹⁾

그의 계부가 생전에 파양한 것은 죄가 윤기를 범했으니 의리상 편안하게 종통을 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一宗이 宗會에서 논의하여 이치에 의거하여 쫓아내고 …… 이른바 정창환은 이미 본조에 정장하여 입후하였으니 사사로이 제멋대로 파양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감히 일제히 소리 높여 아됩니다. 삼가 바라건대 세세하게 살펴주신 후 정창환을 파양하고 …… 이치를 따져 처분해주시면 한편으로는 선조의 제사를 받들고 한편으로는 倫紀를 바르게 하실 것을 천만 바랍니다.⁵⁰⁾

-
- 47) 1858年 鄭行杰 等 單子. 生之先■■■■ 贈諡良景公諱熙啓開國第一等功臣也. 丹書鐵券, 在載勳府, 至蒙不祧之典, 而其祀孫行默無嗣, 以遠宗全羅臨陂居鄭昌煥, 去丙申分, 呈本曹繼後矣.
- 48) 1858年 鄭行杰 等 單子. 昌煥恒在渠■■■■無奉養繼父之意, 其不孝罪狀, 非止一再, 故行默罷養還送, 則昌煥破碎廟門, 拔劍作拏, 潛盜本曹文券, 還歸本家, 因爲絕跡矣.
- 49) 1858年 鄭行杰 等 單子. 去丙辰八月, 祀孫行默卒逝, 數月後, 昌煥自稱繼子, 突入■喪, 世豈有如許生無事以禮之, 死有蒙其喪之義乎? 究厥宅心, 則不以倫紀爲重, 而以祀孫爲重者也.
- 50) 1858年 鄭行杰 等 單子. 渠之繼父生時所罷養, 而罪犯倫紀者, 義不可晏然繼宗, 故自一宗之宗會收議, 據理責黜, …… 所謂昌煥既已呈本曹立后, 則不可以私自罷養, 故茲敢齊聲仰籲. 伏願閣下細細垂察後, 以罷黜昌煥立準海之意, 論理題給, 一以奉祖之祀, 一以正倫紀之地, 千萬伏祝.

위의 내용에 따르면, 파계의 일차적인 원인은 계후자 정익환에게 있었다. 양부의 입장에서 정익환은 계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부를 봉양하지 않았고 불효를 행한 것이 여러 번 있었다. 이 때문에 양부 정행묵은 정익환이 앞으로 계후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간주한 것이다.

경주정씨 가문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까다로운 입후 절차를 준수하여 정익환에게 계후자의 자격을 부여하고 양육한 것은 향후 선조의 봉사를 맡김으로써 가문을 존속·유지시키고자 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⁵¹⁾ 그리고 선조를 봉사한다는 것은 효의 의미가 확장되어 사후에도 봉양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인데,⁵²⁾ 부모의 생전에도 봉양하지 않고 불효한다면 부모의 사후에도 봉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계후자 정익환은 양부 및 문중의 이 같은 결정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불천위 사우의 문을 훼손하고 양부를 위협하는 난동을 통해서 분노를 표출하였으며 국가에서 자신의 계후자 자격을 인정해 준 증명서인 계후입안을 챙겨서 생가로 돌아갔다. 그리고 2년 뒤 양부 정행묵이 사망한 후 다시 양가로 돌아와 계후입안에 의거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계후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였다.

문중에서는 정익환의 이러한 행동이 인륜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사손의 지위만 중요하게 여긴 것이라 보았다. 또한 양부와 문중이 논의하여 이미 파계를 결정하였으므로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

51) 제도적 입후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계후자를 양육 사례들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부자관계의 형성하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 즉 부모는 자식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다하고 자식은 이에 대한 은혜를 갚는 차원에서 부모의 봉양과 봉사에 대한 의무를 지닌다고 여겼다(고민정, 2015, 「조선후기 입후 절차에 관한 연구」, 『사학연구』 117, 311~326쪽).

52) 鄭肯植, 1996, 「朝鮮初期 祭祀承繼法制의 成立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사학위논문.

경주정씨 가문의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후기 罷繼의 양상과 가문의 계승

나 아직 정익환이 계후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정익환이 이를 근거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였으므로 입후할 때와 마찬가지로 예조에 呈狀하여 정익환의 파계를 요청하였다.

예조에서는 문중의 청원에 대해서 해당 내용이 인륜에 크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엄히 조사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營門에 가서 呈狀할 것을 처분하였다.⁵³⁾ 문중에서는 이와 같은 예조의 처분에 따라 다시 경기도관찰사와 안성군수에게 해당 사건을 조사해달라는 청원을 각각 올렸다.⁵⁴⁾

사실 문중에서 주장하는 파계는 다른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쉽게 결정될 수 있는 간단한 사안이 아니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입후는 법제에서 규정한 내용을 따르면 가능한 것이지만 파계는 법제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 물론 명종대의 수교를 통해서 생가의 질사로 인해 파계귀종한 특수한 경우에는 파계가 인정되기도 하였으나, 이 경우는 그와 달랐다. 또한 입후한 후 뒤늦게 성립 자체에 대한 법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이는 인륜과 관계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국가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에서 접근하였다.⁵⁵⁾ 따라서 파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륜을 유지할 수 없는 심각한 이유가 존재해야 했고, 이를 토대로 천명의 대리자인 국왕을 설득하여 특별히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한 부분이었다.⁵⁶⁾

문중에서 안성군수에게 단자를 올린 후, 안성군수가 예조의 결정에 따라 엄히 조사하여 영읍에 보고할 것이라는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관아

53) 1858年 鄭行杰等 單子. 題辭: 果如狀辭大關倫彙, 不可尋常處之, 嚴查決正之意, 往呈營邑向事.

54) 1858年 鄭五誠 單子; 1839年 鄭行杰等 單子.

55) 고민정, 2015, 「조선후기 입후의 방식과 계후자의 항렬」, 『태동고전연구』 34, 163~164쪽.

56) 고민정, 2016, 「조선후기 연좌제 운영을 통해 본 罷繼의 양상과 가계계승」, 『사학연구』 124, 81~82쪽.

차원에서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사건은 여기서 결론을 보지 못하였다. 문중의 주장에 따르면 그것은 계후자 정익환이 관아의 조사에 성실하게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안성관아에서 원고와 피고의 대질심문이 있기로 한 날에 피고인 정익환이 출석하지 않아 조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⁵⁷⁾ 이로써 경주정씨 가문의 파계 갈등은 일단락되었으나, 10여년이 지난 후 정익환의 아들 정판석이 다시 문제를 제기하면서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였다.

3. 2차 파계 갈등

정행목의 후사 문제를 둘러싼 2차 갈등은 1871년 정익환의 아들 정판석이 운현궁과 영읍에 소장을 올리면서 시작되었다.⁵⁸⁾ 정판석은 부친 정익환이 정행목의 계후자임을 증명한 계후입안을 근거로 정행목의 동생 정행렬이 奪宗하였다고 주장하였다.⁵⁹⁾

정행렬은 정행목의 둘째 동생으로 처음에는 麻峽에 거주하였으나 이후 처향으로 이거하였다가 약 2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안성으로 돌아왔다.⁶⁰⁾ 그의 슬하에는 鄭泰海, 鄭準海라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으므로,⁶¹⁾ 문중에서는 정익환을 대신하여 정행렬의 둘째 아들 鄭準海를 새로운 계

57) 1871年 鄭敬圭等 上書. 當昌煥之冒喪, 事繼倫紀, 不敢於宗中處決, 至有呈禮曹及營邑之舉, 則昌煥自知罪不容於覆載之間, 不敢對卞, 而至■……■無影響矣.

58) 1871年 鄭行烈 單子. 民因判石誣訴於雲峴宮及營邑事, 昨有所對辨是白遺果.

59) 1871年 鄭敬一等 單子. 鄭判石爲名漢, 持其父偷去之禮斜一張, 誣訴以奪宗, 眩擾於京鄉, 盡是踵父之惡者也. 遂送翼煥, 繼立準海, 乃是民等諸宗之公議也. 本非行烈之擅行, 則判石之奪宗二字, 都是構誣也.

60) 1871年 鄭行烈 單子. 民以家勢赤貧, …… 欲資於麻峽, 難兄家而贅妻鄉者二十年矣. 山遠水遠, 來罕往稀, 勢固自然也.

61) 『慶州鄭氏良景公派大同世譜』 1권 32쪽.

경주정씨 가문의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후기 罷繼의 양상과 가문의 계승

후자로 지정하고⁶²⁾ 정행렬에게 攝祀하게 하였다.⁶³⁾ 정판석이 정행렬을 고소한 것은 아마도 이러한 전후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정판석은 부친 정익환의 뒤를 이어 승계해야 할 정희계의 봉사손 자리를 정행렬에게 빼앗겼다고 판단한 것 같다.

정행렬은 두 가지의 사실을 들어 정판석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첫째, 정익환을 파계한 것은 친형인 정행목이 한 일이라는 것이고 둘째, 자신의 아들 정준해를 계후자로 삼은 것은 문중에서 결정한 일이라는 것이다.⁶⁴⁾ 다시 말해 정익환의 파계와 정준해의 입후는 모두 당사자인 양부와 문중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며 다른 사적 의견이 개입된 것이 아니라 공론에 의해 결정된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정익환의 성품이 패악하지 않았더라도 양부 정행목과는 촌수를 헤아릴 수 없는 혈연적으로 먼 관계이지만 정준해는 친동생의 아들로 친조카에 해당되므로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정익환을 파계하고 정준해를 입후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보았다.⁶⁵⁾ 그런데 이 주장은 당시의 입후 경향에 비추어볼 때 비교적 거리가 있다. 17세기 이후로 입후가 증가함에 따라 가까운 친족 간의 입후는 물론이고 먼 친족 간의 입후도 함께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⁶⁶⁾ 더욱이 법제적으로 양부와 생부간의 촌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이것은 정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향렬의 문제와 같이 위법한 사항이라서 반드시 파계를 해야 하는 정도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⁶⁷⁾

62) 1858年 鄭行杰 等 單子. 以行默之弟行烈之子準海繼後, 而使奉先祖養景公之祀事.

63) 1871年 鄭敬一等 單子. 後數年道默之弟行烈, 離居他鄉二十餘年而還, 幸復有子, 故民之諸宗議, 以行烈替兄攝祀, 立兒繼后.

64) 1871년 鄭行烈 單子. 民之子準海年紀稍長, 及發喪承統, 先所罷送翼煥, 乃兄之爲也. 後所承宗準海者, 諸族之事.

65) 1871년 鄭行烈 單子. 雖使翼煥不甚悖凶, 本是不計寸之氏姓也. 準海既且肖長 而乃是親弟之子 所當罷者翼煥也. 所當繼者準海

66) 최재석, 앞의 책, 621쪽.

모두 勒奪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⁷¹⁾ 그러나 문중에서는, 종가는 본래 있던 곳에 계속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一邑에서 모두 아는 사실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전토는 奉養과 哀戚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모두 인륜에 관계되기 때문에 虐탈 자체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⁷²⁾ 즉 정판석은 본인이 소유해야 할 재산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반면, 문중은 그와 상관없이 종가와 전토를 유지하면서 원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았다.

셋째, 족보와 계후입안, 호적 등의 기록 내용에 대한 쟁점이다. 문중에서는 정익환을 과계하고 정준해를 계후자로 결정하고 난 뒤, 족보를 수보할 때 정익환 대신 정준해를 계후자로 懸錄하였다.⁷³⁾ 또한 정행묵의 상례 때 神主旁題를 정준해로 기록하였다.⁷⁴⁾ 즉 족보에는 문중의 결정사항이 즉각 반영되어, 문중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애초에 정판석이 소송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판석의 부친 정익환을 정희계의 봉사손인 정행묵의 계후자로 인정한다는 계후입안이 유효했기 때문이었다. 문중에서도 계후입안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정익환을 과계했을 때 그가 계후입안을 훔쳐 달아났고 즉시 추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빌미를 제공한다고 여겼다. 그리고 1차 과계 갈등이 있었던 당시 예조와 영읍에 올린 문권을 근거로 정익환이 계후입안을 훔쳐 달아난 사실을 증빙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⁷⁵⁾

71) 1871年 鄭敬保 等 上書. 其曰家宅■■勒奪云云.

72) 1871年 鄭敬保 等 上書. 生之宗家, 自來亦立壹面一邑之所共知者, 有何可■■田土乎? 設有田土, 渠若生而奉養之, 死而哀戚之, 則孰敢有滅絕人羣, 肆然勒奪者乎?

73) 1871年 鄭敬保 等 上書. 生之姪年纔十歲名其準海者, 定爲嗣孫, 而旋及修譜, 懸錄準海於譜牒.

74) 1871年 鄭敬一等 單子. 道默嬰疾數年而死, 故使之被喪 傍題神主 懸錄族譜, 卽今準海也.

75) 1871年 鄭敬保 等 上書. 第其罷去時昌煥之盜去文籍, 不卽推尋, 仍爲任置, 此可爲判石執言, 端然昌煥逃居他道, 而生等既有呈春曹及營邑之文卷, 則彼之盜去者, 不足憑據, 明矣.

이와 더불어 문중의 주장대로 1852년 정익환을 파계했는데도 불구하고 1855년에 작성된 호적에서 정익환을 계속해서 率子로 표현한 것도 논쟁이 되었다. 즉 을묘호적의 내용에 따르면 정익환은 여전히 정행묵의 계후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문중에서는 당시 정행묵이 병환 중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옛 장적대로 그대로 기재하였기 때문에 생긴 착오라고 보았다. 그리고 정희계의 사손은 전체 경주정씨를 위한 공적인 입장에서 정준해로 결정하였음을 재차 강조하였다.⁷⁶⁾

그런데 문중의 주장과 계후입안·호적 기록의 불일치는 ‘파계’라는 용어가 가진 효력의 범주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문중에서 1852년 정익환을 ‘파계’했다고 할 때의 ‘파계’는 문중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범위를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바꾸어 말하면 문중에서 ‘파계’했다고 주장해도 여전히 계후자의 지위를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이들과의 분쟁이 장기간 지속된 것은 국가가 인정하는 법제적 차원에서 ‘파계’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처럼 입후 당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적법절차를 거쳐 계후입안을 발급받은 사례는 파계할 때도 다시 국왕의 허가를 받아서 기존의 계후입안을 무력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⁷⁷⁾

이러한 쟁점들은 쉽게 결론이 나는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의 대질신문과 조사를 거쳤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안성에서 이루어

76) 1871年 鄭敬保 等 上書. 壬子罷繼, 則乙卯戶籍之書以率子云云者, 亦可爲執言之端, 而是則所不敢知然, 必也. 其嗣孫行默, 既病之中贍舊■■而書者也. 豈可以彼■■模數端, 斷此極明白, 極誣枉之事狀乎. 而況良景公祀孫, 則爲一鄭之大宗, 決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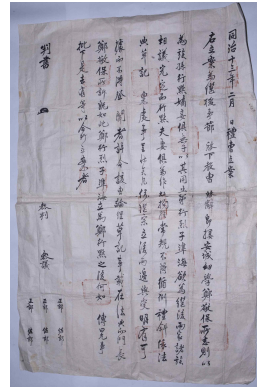
77) 이렇게 볼 때 ‘파계’라는 용어는 학술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즉 문중의 차원에서 통용되는 ‘사회적 파계’와 법제도적 차원에서 통용되는 ‘법적 파계’로 구분 지을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입후를 논할 때 문중 차원에서만 이루어진 입후와 문중의 차원을 넘어서 법제적으로 인정된 입후로 구분 짓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경주정씨 가문의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후기 罷繼의 양상과 가문의 계승
 진 첫 번째 소송에서는 문중이 승소하였으나 인천에서 이루어진 두 번째
 소송에서는 정판석이 승소하였다.78) 마지막 소송에서는 다시 문중이 승
 소하여 정익환의 파계가 성립되었고 이를 정식으로 인정하는 왕의 윤허
 가 내려졌다.79)

【사료 1】 1874년 예조계목



【사료 2】 1874년 정행묵
 계후입안



4. 파계 이후의 갈등

이처럼 1838년 정행묵의 계후자가 되었던 정익환은 성품과 자질이 계
 후자로서의 자격에 미치지 못한다는 문중의 주장에 따라, 문중과 두 차례
 갈등을 겪었으며 약 40년이 지난 1874년에 파계되었다. 문중에서는 국가로

78) 1872年 鄭準海 單子. 以仁川查報言之, 亦不無文字歸重於判石矣. 當初判石以前查
 謂之偏聽誤決, 則生亦謂再查之爲偏聽誤決可乎? 以前後查報參覽裁斷公決, 則是非
 判矣. 曲直分矣.

79) 1874年 禮曹啓目. 鄭行默所後子翼煥依願罷養, 當初葉作及立案爰周勿施何如? 啓
 依允.

부터 정익환의 과거를 인정받는 것과 별개로 그들이 내세운 새로운 계후자 정준해의 입후를 함께 추진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정익환의 과거와 거의 같은 시기에 정준해가 정행묵의 후사로 입후되어 계후입안이 발급되었다.

통상적인 입후를 위해서는 養家 부모와 生家 부모가 생존한 것을 전제로 하여 양쪽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한 절차이다. 그러나 이 당시 정행묵의 부처가 모두 사망하였기 때문에 양가 부모의 동의를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와 같이 양가 또는 생가 부모가 모두 사망한 후에 입후를 추진하는 경우는 『경국대전』 「입후」조에 저촉되어 입후가 허가될 수 없었다. 그리고 17세기 이후 입후가 확산되면서 이와 같은 사안들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⁸⁰⁾

국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한 허가를 통해서 입후할 수 있게 조치하였다. 그리고 18세기 후반에는 양가 또는 생가 부모가 사망하여 어느 한쪽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입후할 수 있게 하는 수교를 선포하였으며⁸¹⁾ 『대전통편』에도 그 내용이 반영되었다.⁸²⁾ 또한 19세기 중반에는 생가 부모와 양가 부모 모두가 사망하여 양쪽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까지 입후할 수 있게 확대하였다.⁸³⁾

문중에서는 이와 같이 변화된 규정에 따라 양가 부모와 생가 부모를 대신하여, 문장 鄭敬保가 정행묵의 후사로 정준해의 입후를 청원하였다. 예조에서도 이에 따라 論理草記하여 최종적으로 왕의 허가를 받았다.⁸⁴⁾ 이로써 경주정씨 가문은 정행묵에서 정준해로 이어지는 계승관계를 국가

80) 고민정, 2014, 앞의 논문, 70쪽.

81) 『承政院日記』 英祖 41年(1765) 5月 16日 庚寅, 『承政院日記』 正祖 8年(1784) 9月 27日 己卯.

82) 『大典通編』 「立後」, “一邊父母及門長上言, 本曹回啓, 許令立後.”

83) 『大典會通』 「立後」, “一邊或兩邊父母俱死, 而拘於常規, 不得登聞者, 本曹論理草記.”

84) 1874년 鄭行默 繼後立案. 凡係繼宗立後, 兩邊與受, 明有可據, 而不得登聞者, 許令該曹, 論理草記事, 載在法典, 而門長鄭敬保所訴既如此, 鄭行烈子準海, 立爲鄭行默之後何如? 傳曰允事批下是去有等以, 合行立案者.

경주정씨 가문의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후기 罷繼의 양상과 가문의 계승

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정익환의 아들 정판석은 이 같은 결정을 승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금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다. 다음은 파계가 이루어진 이듬해 1875년 정준해가 영읍에 내린 上書의 일부분으로, 파계가 결정된 뒤에도 서로간의 갈등이 반복되었다.

작년에 밤의 기세를 타고 祠宇로 갑자기 들어와 廟門을 부수고 그대로 祠版을 훔쳐 은닉하였습니다. 그 죄상을 살펴보고 법을 살피면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임금의 결정이 이미 정해졌는데 그가 어찌 감히 이와 같이 무엄하게 변괴를 일으킵니까?85) ……

이른바 부화뇌동한 자이며 정판석의 인척인 박선우를 열음으로 옮겨 가두시고 그 도둑을 징계하는 법률로 벌하시고 정판석은 법률에 비추어 刑配하시며 …… 양경공 신주를 다시 봉안하게 하길 바랍니다.86)

위의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파계의 결정이 내려진 후, 정판석은 안성에 거주하던 인척 朴善友와 공모하여 정희계의 사우에 몰래 침입하였고 사판과 제기를 훔쳐 달아났다. 이에 문중에서는 정판석의 부친 정익환을 파계한 사실과 정준해를 입후한 사실을 증빙한 문서를 첨부하여 정판석과 박선우를 법에 따라 처벌하고 사판을 다시 사우로 봉안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영읍에 청원하였다.

정판석은 사판과 제기를 자신의 근거지인 임피에 봉안하였다고 주장하였다.87) 그러나 조사 결과 제기와 사판을 모두 박선우 집에 보관하였다

85) 1875年 鄭準海 上書. 昨年分乘夜突入祠宇, 破碎廟門, 因偷祠版而隱匿, 究厥罪狀, 未免按法之誅也, 天決已定. 渠安敢如是無嚴作變乎?

86) 1875年 鄭準海 上書. 所謂符同指喉者, 判石查親朴善友段, 移囚列邑, 以懲其窩主之律, 判石則照律刑配, 以治其偷主, 不有天決之罪, 而良景公廟主使之還爲奉案.

87) 1875年 鄭敬保 單子. 判石之訴 自初移安臨陂者.

가 제기는 팔아치우고 사판만 다시 가져간 사실이 확인되었다.⁸⁸⁾ 또한 사판을 자신의 집에 보관하였다가 동생 鄭東奎의 집으로 옮겨 보관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되었다.⁸⁹⁾

결국 정판석과 박선우는 처벌되었고 사판은 원래 사우로 봉안하라는 처분이 내려졌다.⁹⁰⁾ 다만 안성에서 임피까지의 거리가 멀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판을 이안할 때 진천 월촌면에 세거한 경주정씨의 도움을 받았다.⁹¹⁾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주정씨 가문에서는 정행묵의 계후자이며 개국공신 정희계의 봉사손 자리를 둘러싸고 세 차례에 걸쳐 갈등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그 갈등이 증폭되면서 물리적 힘이 동원되는 사태까지 이르렀으나, 국가의 개입으로 문중의 논리가 인정되어 기존의 계후자 정의환은 파계되고 새로운 계후자 정준해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파계 이후에도 증폭된 갈등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고 정의환 측에서 정희계의 사판을 탈취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다시 한번 국가가 개입하여 사판을 탈취한 정판석을 처벌하고 사판을 원래대로 봉안하게 함으로써 강제로 해소되었다.

88) 1875年 鄭敬保 單子. 判石偷取良景公祠版與祭器, 入于矣身之家, 故祭器則買以置之, 祠版則判石還爲奉去.

89) 1875年 鄭準海 單子. 判石口招勳祖祠版, 則移安于渠之生家, 徒弟東奎家, 而東奎則居於臨陂之地云.

90) 1875年 鄭準海 單子. 所謂判石, 未知何樣悖類, 而敢行偷取祠版之舉乎? 詳查後, 爲先嚴刑報來, 而祠版卽爲還奉於狀, 民家朴善友, 亦爲捉致一體報來向事.

91) 1875年 鄭準海 單子. 鎮川月村面芳洞諸宗中門長處, 嚴明文移, 祠版奉安時, 陪行次招致四五人, 則事體當然, 而其在雲仍之道, 必無遲緩之弊矣.

5. 파계의 이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후자 정익환의 파계가 이루어진 1차적인 원인은 계후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계후자는 처음부터 가문의 계승을 위하여 의리적 부자관계를 맺어, 양가 부모는 계후자를 양육할 책임이 있고 계후자는 양가 부모를 봉양함은 물론이고 선대의 봉사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문중에서 더욱 문제라고 주장하며 비판했던 것은 계후자가 봉양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것보다 문중에서 결정한 파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데에 있었다. 즉 문중에서는 정익환이 파계에 불복하여 양부를 위협하고 정희계의 불천위 사우에 부린 행패를 더욱 부각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익환의 성품과 자질이 계후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증거가 되었지만 선후 관계로 볼 때 재론의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정익환이 애초에 계후자로 지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계후등록』에 따르면 분명 정익환의 입후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생가 부모와 양가 부모의 동의가 이루어진 것은 물론이고 문장이 증인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문중에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생부와 양부가 항렬이 같은 8촌지간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최소 친족 범위 내에 포함되었다.

그런데 파계를 요청하는 문중의 소장을 보면 정익환의 입후가 문중과 상의하여 결정된 것이 아니라 양부 정행목이 독단적으로 벌인 일로 치부하고 있다. 또한 분명 8촌내의 친족 관계에 있음에도 촌수를 헤아릴 수 없는 원족에서 입후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정익환의 입후가 가진 정당성을 무너뜨리려고 하였다. 이렇게 볼 때 문중에서 계후자 정익환을 바라

보는 시각이 입후 전후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익환을 과거하면서 문중에서 내세운 새로운 계후자는 정준해인데, 양부 정행묵과 생부 정행렬은 친형제 사이로 가장 가까운 친족 관계에 해당된다. 정행렬은 혼인 후 경주정씨의 세거지와 멀리 떨어진 처향으로 이거하였다가 20년만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친형 정행묵의 입후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것으로 서술하였다. 이러한 전후 맥락을 고려해보면 정행묵의 정익환을 입후할 당시 정행묵의 아들을 그 후보로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정익환의 입후는 1838년에 이루어졌으나 정준해는 이보다 한참 늦은 1846년에 태어났으므로 사실상 이를 고려하기는 불가능하였다.

즉 정행묵의 후사를 정할 당시에는 정익환이 입후에 가장 적합한 후보자라고 생각하였으며 다른 대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행묵 이전의 계승 사례들을 살펴보면 입후를 통해서 가문의 계승을 수행하였던 경험이 축적되어 있었고 이 경우도 그와 마찬가지로 진행하였던 것이다. 다만 이 경우가 그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 것은 기존의 계후자를 대체할 수 있는 혈연적으로 더 가까운 후보자 정준해가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계후자를 결정하는 주체에 변화가 생겼다. 즉 정익환을 자신의 계후자로 결정했던 양부와 문중을 대표하여 입후의 증인이 되었던 문장이 모두 사망하였다. 그리고 차후에 구성된 문중에서는 정익환의 성품과 행동이 봉사손으로서의 역할을 맡기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정준해가 대안으로 존재하였기 때문에 과거를 감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 문중에서는 더 적합한 자를 계승자로 인정하여 가문을 유지·존속시키고자 전략적인 선택을 하였으며, 이는 가문의 운영을 위한 하나의 정치적 선택이었다.

맺음말

본고는 조선후기 가문의 유지와 존속을 살펴보기 위한 일환으로, 경주정씨 가문의 고문서를 분석하여 가문의 계승 과정과 파계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는 입후가 곧 가계계승의 성공이라는 등식에서 탈피하여 입후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계승의 문제와 갈등 상황 등을 조명하고 그 특징을 고찰하려고 하였다.

경주정씨 가문은 정희계가 조선을 개국하는 태조를 보좌한 공으로 개국일등공신이 되면서 가문의 위상이 높아졌다. 후손들은 정희계의 불천위 사우에 봉사하며 공신의 적장후손으로서 일정한 대우를 받았다. 이 가문은 고려 말 개성에 거주하였으나 조선의 개국 후 한성으로 이거하였다. 또한 17세기 중반에는 충남 홍주에서 세거하였으며 19세기 중반 이전에 현재의 세거지인 안성으로 이거하였다.

이 가문의 가계계승 상황을 살펴보면 대체로 적장자에 의한 승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길상의 첫째 아들 정지인이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정길상에서 정길상의 둘째 아들 정지의로 승계되는 형망제급의 형태가 나타났다. 이 이후로는 적장자 승계가 불가피한 경우 모두 입후에 의한 승계가 이루어졌는데, 사회적으로 입후를 선호한 현상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보인다.

적장자 대신 계후자에 의해 승계된 경우라도 다시 적장자에게 승계되며 대를 이었기 때문에 가문은 대대로 존속되었다. 그러나 정행묵의 경우에는 아들이 없어 입후한 계후자가 그 자질 문제로 파계되었고 또 다시 새로운 계후자를 입후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더욱이 처음 입후된 계후자가 문중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기 때문에, 문중과는 갈등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를 시기적 추이와 사건의 전개에 따르면

세 단계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1858년 전후로 문중에서 계후자 정익환의 자질을 문제삼아 파계하였으나 양부 정행목이 사망한 후에 정익환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생긴 갈등이다. 정익환은 국가로부터 발급받은 계후입안을 근거로 그 정당성을 주장하였고, 문중에서는 정익환이 양가 부모를 봉양하지 않은 것과 사우에 물리적 행사를 한 것을 부각시켜 그 자질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두 번째는 1871년 전후로 계후자 정익환이 사망한 후에 정익환의 아들 정판석이 계후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생긴 갈등이다. 정판석도 역시 그의 부친 정익환을 계후자로 인정한 계후입안을 근거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문중에서는 정익환을 파계했으므로 정익환의 아들 정판석에게도 계후자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세 번째는 1875년 전후로 국가의 개입으로 정익환이 파계되고 새로운 계후자를 다시 세웠으나 정판석이 이에 불복하여 생긴 갈등이다. 정판석은 소송에서 진 후 무력으로 봉사손 자리를 빼앗으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미 국가에서 문중의 입장에 따라 정준해를 계후자로 승인한 후였기 때문에, 정익환의 행위는 법규에 따라 처벌되었다.

이처럼 경주정씨 가문은 조선후기 가문의 계승에 대한 실천 의지가 강화되면서 적장자 계승을 중요하게 여겼으나, 적장자가 없는 경우에 부계 친족의 조카를 계후자로 세우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즉 입후는 적장자의 부채를 메꾸어 주는 동시에 가문의 계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방식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행목의 후사를 둘러싼 갈등에서 알 수 있듯이 계후자와 문중간에 계승권을 두고 갈등이 시작되면 상당기간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며, 극단적으로는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갈등은 가문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국가가 개입하여 해소되었다.

경주정씨 가문의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후기 罷繼의 양상과 가문의 계승

문중에서 이와 같은 갈등이 파생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파계한 후 새로 입후한 것은 더 적합한 자를 계승자로 선택하여 가문을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선택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계후자를 결정하는 주체의 변화, 기존 계후자의 자질과 성품의 문제, 가문을 계승할 수 있는 새로운 후보자의 등장 등 환경적 요인이 변화된 것이 주요한 이유가 되었다.

참고문헌

1. 사료

경주정씨 가문 소장 고문서

『經國大典』

『慶州鄭氏良景公派大同世譜』

『繼後謄錄』

『高麗史節要』

『大典通編』

『大典會通』

『牧隱文藁』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辛卯別試文[武]科榜目』

2. 논저

고민정, 2013, 「조선후기 장자 계후의 특권적 성격」 『태동고전연구』 31.

고민정, 2014, 「조선후기 가계계승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고민정, 2015, 「조선후기 입후 절차에 관한 연구」, 『사학연구』 117.

고민정, 2015, 「조선후기 입후의 방식과 계후자의 항렬」, 『태동고전연구』 34.

고민정, 2016, 「조선후기 연좌제 운영을 통해 본 罷繼의 양상과 가계계승」, 『사학연구』 124.

권내현, 2008, 「조선후기 입양의 시점과 범위에 대한 분석」, 『대동문화연구』 62.

권내현, 2014, 『노비에서 양반으로, 그 머나먼 여정』, 역사비평사.

경주정씨 가문의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후기 罷繼의 양상과 가문의 계승

- 金斗憲, 1983, 『韓國家族制度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 마크 피터슨 지, 김혜정 역, 2000, 『儒敎社會의 創出』, 일조각.
- 박 경, 2011, 「罷繼 행정을 통해 본 18세기 입후법 운용」, 『장서각』 25.
- 박 경, 2011, 『조선 전기의 입양과 가족제도』, 혜안.
- 신명호, 2003, 『조선의 공신들』, 가람기획.
- 안성문화원, 2011, 『안성시지 문헌자료집』 8, 안성시.
- 전경목, 1994, 「朝鮮後期 所志類에 나타나는 '化民'에 대하여」, 『고문서연구』 6.
- 전중환, 2005, 『중족집단의 경관과 장소』, 논형.
- 鄭肯植, 1996, 「朝鮮初期 祭祀承繼法制의 成立에 관한 研究」, 서울대박사 학위논문.
- 정만조 외, 2004, 『조선시대 경기북주지역 집성촌과 사족』, 국민대출판부.
- 최재석, 1996, 『韓國家族制度史研究』, 一志社.

Abstract

The aspects of the Successor-Releasement(罷繼) during the Late Joseon and Family Succession through the Ancient Documents of Gyeongju Jeong Family⁹²⁾

Ko, Min Jung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succession process and the aspects of the Successor-Releasement by analyzing the ancient documents of Gyeongju Jeong family in order to consider family succession during the late Joseon. By escaping from the viewpoint so far that Ibhoo was success in family succession, this research intended to view the problem of succession that might occur after Ibhoo.

Gyeongju Jeong family resided in Gyeonggi-do Anseong, as the descendants of eldest sons of Yanggyeonggong Jeong heegye. To see the aspects of family succession of this family, basically their succession was done by the eldest son, however, if there was no eldest son, family succession was mostly done by Ibhoo.

Such conflict in the family due to the Successor-Releasement occurred due to Jeong Haengmuk's descendant, which was developed through 3 stages. First was, a conflict by Jeong Ikhwan, who didn't accept the idea

92)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7S1A5A8021566)

경주정씨 가문의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후기 罷繼의 양상과 가문의 계승

of Pagye of him as the successor determined by the clan due to his personality and qualification. Second was, due to Jeong Ikhwan's son, Jeong Panseok, who didn't accept Pagye again and insisting that he was the successor of Jeong Heegye. Third was, Jeong Ikhwan's physical exertion, such as extortion of Sapan, etc., disobeying official Pagye of Jeong Ikhwan.

This way, when the conflict surrounding family succession right between the successor and the clan began, it took quite a long time, self-adjustment was not possible, eventually, such conflicts were compulsively settled by the intervention of the nation.

Also, such Pagye determined by the clan nevertheless such conflict was to operate the family by selecting more suitable successors. That is, it was an output created by the change of the main agents within the clan who determined the successors, matter of qualification and personality of the existing successors, and appearance of new candidates, etc.

Keywords : the Successor-Releasement, family succession, adopting sons, family structure, the Adoption Register, kin group

